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해상 특송 수입물품 급증에 따른 현장검사와 및 마약 밀수 수사 강화를 위하여 특송통관과와 마약조사2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고, 항공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 분석 및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9명)을 증원하며, 증원되는 인력 중 10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관세청에서 관장하던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관세청 소속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83”을 각각 “4,916”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4,528”을 “4,551”로 하며, 전문경력관 “349”를 “359”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별표 4]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0조의2제1항 관련)

1.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통관국 1개 과	3명	2023년 9월 30일까지

2. 관세청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부산세관 1개 과	5명	2022년 9월 30일까지
2) 인천세관 1개 과	12명	2024년 9월 30일까지
3) 평택세관 1개 과	8명	2024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7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3)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30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5)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6)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883</u>	<u>4,916</u>	+33
일반직 계	<u>4,883</u>	<u>4,916</u>	+3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28</u>	<u>4,551</u>	+23
전문경력관	<u>349</u>	<u>359</u>	+10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4